

규제연구 제12권 제1호 2003년

# 병역자원 수급전망과 복무기간 조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

## 이 상 목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분포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운용실태와 병역부담회피사유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개관하였으며, 병역자원의 수급전망을 기초로 복무기간 조정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은 병역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현역·대체복무·병역면제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병역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타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은 현역복무 기피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병역자원 수급전망에 기초한 분석결과, 현역인구 및 대체복무제도를 현행으로 유지하고 가용인력의 공급변화에만 의존할 경우, 2개월 단축의 복무기간 조정은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겠고 가용인력의 과잉공급년도에 의한 누적잉여인력을 인력과부족년도에 적절히 분산하는 병무행정이 이루어진다면 3개월 단축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을 기초로 공익근무 및 산업기능 요원을 일부 감소할 경우 4개월까지의 복무기간 단축이 현실화될 수 있고, 심지어 공익근무 및 산업기능 요원제도를 완전 폐지할 경우에는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단축도 가능하다. 따라서 병역제도 및 병무행정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3개월 단축이 바람직하겠으나 대체복무인구의 축소로 현역복무자의 복무기간을 4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과 병역기피현상을 완화하는 보다 바람직한 정책이라 사료된다. 단지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군구조와 병력 수를 불변으로 간주하고 복무기간 조정가능성을 분석하였으나 향후의 국가안보정책과 군사전략이 어떠한 속도와 강도로 작지만 강한 첨단기술군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현역소요인력과 복무기간은 가변적임으로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병역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후속연구와 국가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 징병제, 모병제, 복무기간, 병역부담, 병역제도

※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건의를 포함한 모든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I. 문제의 제기

첨단무기체계의 시험장이었던 걸프전·아프가니스탄전·이라크전의 경험은 우리에게 노동집약형 군구조의 무용성과 기술집약적 군구조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였고 국방정책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군구조 변화는 비단 전 시상황에서의 전쟁수행능력의 제고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평시에는 확고한 중·장기적 군사전략의 기초 아래 전쟁억제를 위한 인력과 자본의 지속적인 투입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제한된 인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sup>1)</sup>

여기서 국가의 재정부담과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한 국가가 어떠한 병역제도를 채택하고, 선병기준은 어떠하며, 어느 정도의 병역규모와 복무기간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현저히 달라진다. 따라서 병역제도는 교육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커다란 관심사항으로 인식되고 있고, 지난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지원법에 의한 군필자 가산제도의 위헌판결, 거듭되는 대선 및 총선후보와 그 가족에 대한 병역의무 불이행 논란, 병무비리에 대한 언론보도, 대선공약사항으로의 복무기간단축 등은 병역제도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을 입증하는 사례라 하겠다.

한편, 병역은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군의 일원으로 일정기간 종사하는 것을 의미

---

1) 군구조 개편은 지금까지 경제적 여건에 대한 논의는 간과한 채 안보 환경과 정책적 여건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안보와 군구조에 관련된 사항은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경제적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사고가 일부 사회계층에 팽배해 있기 때문인데, 이들의 논리는 군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국가안전보장을 생산하는 국가임무를 띠고 있으며 국가안보의 공급 면에서 독점적 위치가 불가피하다는 데에 기초한다.

하고, 병역제도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외부위협 의 강도와 경제적 수준, 정치체제, 국민의 가치관과 역사적 경험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채택되며, 채택된 제도의 형태에 따라 국가의 강권력이 작용하는 징집제와 자유선택에 의한 모병제로 대별된다.<sup>2)</sup>

징병제와 모병제의 특성을 보면, 징병제는 의무병역제도의 대표적인 제도로서 민주사회에서 국민에게 부여된 참정권에 상응하는 급부로 병역을 인식하며 개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징집되는 강제성 이외에 낮은 보수를 그 특징으로 한다. 또한 징병제는 군의 사회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병역의 양적, 질적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징집인력에 대한 낮은 보수로 국방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징병제 중 전면징병제는 병역대상자 전원이 현역으로 징집되기 때문에 병역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병사의 직무수행에 상응하는 개인의 능력과 기타 개인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 징집으로 인해 국가인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라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그러나 병역대상자보다 군소요에 기초한 징집인력이 적을 경우 부분징집제의 채택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부분징집제는 병역의 형평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가인적자원의 비효율적 운용<sup>3)</sup>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징병제와는 달리 모병제는 인간의 자발성과 동기유발, 고도산업사회의 분업원칙에 기초한 제도로서 병역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성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병군은 사회적 대표성이 부족하여 국가 속의 또 다른 국가 state in the state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민주사회의 형성과 안정화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sup>4)</sup>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중군대의 감소로 민군관계에 있어 갈등이 증폭

2) 징병제(conscription)와 유사용어로 의무제(compulsory military service system)가 있으며, 징병제는 다시 모든 병역대상자가 군 또는 국가가 정하는 공공분야에 근무하는 전면징집제(universal military service system)와, 병역대상자 중 일부만 징집되고 나머지는 특례법에 의거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부분징집제(selective service draft)로 세분화 된다. 병역제도의 세부분류에 대해서는 권희면·정주성·이원배, 『병역제도 개선방향연구 -국방의무의 개념정리 및 징집인력인력의 효율화를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1993. p.6 참조 ; 김경엽·이진재·정종식, 『병역제도 선택에 관한 이론연구』, 신정현편, 『선진국방의 비전과 과제』, 나남, 1996, p.397. 참조.

3) Friedman은 징병제로 인한 국가인적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barbarous custom’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Friedman, M., “Why not a Volunteer Army?”, in: S. Tax(edit.) The Draft, Chicago, 1966, p.207.).

4) Ehlert, W., “Zur Diskussion Wehrpflicht-Freiwilligenstreitkräfte: eine Zusammenstellung der gängigen Argumente,” Studie des Zentrums Innere Führung, Bereich 5, 1992.

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고<sup>5)</sup> 군대의 본질인 공익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서 병역제도와 민주주의의 안정 사이에 역사적으로 뚜렷한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없고, 또한 군의 핵심역할을 하는 장교와 하사관이 이미 직업군인으로서 국가안보와 헌법수호에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병을 모병제로 충원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up>6)</sup>

상술한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병역제도에 대한 연구는 제도의 채택에 따른 장단점과 병역부담의 형평성 및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sup>7)</sup>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sup>8)</sup>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전반에 대한 연구보다는 논의의 초점을 제한하여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기초로 현행 복무기간의 조정가능성과 그 한계를 고찰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단, 복무기간과 연계된 병사의 숙련도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숙련도에 대해 학계나 국방부 등에서 일치된 개념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인력이 전체소요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병사의 숙련도가 복무기간과 비례한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의 수동 또는 반자동의 무기체계에서는 숙련에 상당기간이 요구되었으나 자동화추세의 현대식무기체계에서는 숙련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부사관제도를 확대운영하거나 또는 일부 유급병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숙련에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어 숙련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에 따른 적정복무기간에 대한 후

5) 홍두승, 『21세기의 군과 시민사회(하)』, 2000, 6 (통권 제16호), [www.mnd.go.kr/mnd-news/sosik/2000/06/2.htm](http://www.mnd.go.kr/mnd-news/sosik/2000/06/2.htm)에서 인용.

6) Schütte, C., “Ökonomische Aspekte der Wehrpflicht,” *Wirtschaftsdienst* 1991/II, p.88.

7) 징병제와 모병제의 운영비용에 대한 논의는 Oi, W., “The Economic Cost of the Draft,” *American Economic Review* 57, 1967 ; Sjaastad, L., Hansen, R. W., “The Distributive Effect of Conscription : Implicit Taxes and Transfer under the Draft System,” in: Kenneth E. Boulding ; Martin Pfaff(Edit.) : *Redistribution to the Rich and to the Poor*, 1972, pp.285-308 ; Tax, S., *The Draft, A Handbook of Facts and Alternatives*, The University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1967. 참조.

8) 국방예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비가시적 사회적 비용의 규모는 각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독일의 경우에는 국방예산의 18-2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Schäfer, W., Schleicher, M., “Zur Frage der volkswirtschaftlichen Opportunitätskosten einer allgemeinen Dienstpflicht,” Hamburg 1996 ; 이상목, 「병역제도의 운용실태와 사회적 비용: 쟁점과 개선방안」, 『국방연구』, 제45권 2호, 2002. 참조.

속연구가 요망된다 하겠다.

본 연구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분포를 비교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병역제도(전면징집제)의 운용실태와 병역부담회피사유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개관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병역자원의 수급을 전망해보고 국민개병주의에 기초한 전면징집제의 향후 시행가능성을 논의한다. 제5장에서는 현행 각 군별 복무기간(육군: 26개월, 해군: 28개월, 공군: 30개월)의 차이를 유지하되 연도별 가용인력·소요인력·잉여인력 구조에 기초해 복무기간 조정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II. 세계 각국의 병역제도: 지역별 분포와 복무기간의 비교

병역제도는 개별국가 처한 외부위협 강도와 경제적 수준, 정치체제, 국민의 가치관과 역사적 경험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채택되는데, IISS(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01)의 지역구분에 기초해 세계를 7개 지역으로 나누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sup>9)</sup>

우선, 자본주의 선진국지역인 서구·북미의 경우 징병제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반반이나, 특히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인접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북부유럽국가와 역사적으로 분쟁이 잦은 터키와 그리스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구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 또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구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동아시아의 라오스, 몽골이 포함된다. 주변국가로부터 안보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고, 천연적 안전지대라는 바다를 갖고 있는 카리브해연안국가들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반대로 중남미대륙에 속한 국가들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9) 세계 각국의 병역제도의 분류 및 특성에 관해서는 김병조, 「한국병역제도의 특성: 비교사회학적 분석」, 『교수논총』 24집, 국방대학교, 2002, pp.291-312. 참조.

〈표 1〉 세계 지역별 병역제도

지 역	징 병 제	모 병 제
서구/북미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몰도바, 스위스, 스웨덴,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핀란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말타, 미국,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동 구	그루지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벨로루시, 불가리아,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유고슬라비아, 슬로바키아,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헝가리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카리브해/ 중남미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칠레, 쿠바, 과테말라, 파라과이, 페루	니카라과, 도미니카,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수리남,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온두라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동아시아/ 대양주	한국, 대만, 라오스, 몽골, 베트남, 북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피지,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중앙/ 남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중동/ 북아프리카	모리타니, 시리아, 알제리, 예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쿠웨이트, 튀니지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요르단, 카타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니, 기니비사우, 니제르,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잠비크, 베냉, 세네갈, 수단, 에리트레아, 중앙아프리카, 차드, 코트디부아르, 토고	가나, 가봉,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공화국, 르완다,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서아프리카공화국, 시에라리온,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지부티, 카메룬, 콩고, 콩고인민공화국, 케냐, 탄자니아

자료 : IISS(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01, 2002.

있는데, 그 이면에는 공산화를 막기 위한 미국의 지원에 따라 우익군부정권이 이들 국가에 들어섰으며 군부정권은 탈냉전시대의 공산화의 위협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정

부계릴라 집단과 조직화된 마약확산과 같은 대내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아시아와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병역제도는 대내적 안보위협과 국가발전수준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대조적인 병역제도를 채택하기도 하고(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들), 반대로 안보위협수준이 현격하게 다르거나 국가발전수준이 크게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병역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동남아시아 대양주 국가들). 이렇게 상이한 병역제도가 채택된 것은 이들 국가들이 철학적·사법적 기반을 달리하는 식민지모국,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제도를 국가발전의 모델로 도입한 결과일 것이다. 즉, 영미법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여 개인을 위해 사회와 국가가 존재하는 반면에, 대륙법은 국가나 사회의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국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는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징병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의무복무기간을 보면 각 나라마다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표 2참조). 서구와 동구지역 국가들의 의무복무기간이 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의무복무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서구지역국가 중 키프로스가 26개월로 가장 길고, 동구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아르메니아가 18~24개월로 가장 긴 것으로 파악된다.

아시아에서는 북한이 5~10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길고, 한국이 26~30개월, 베트남, 싱가포르가 24~30개월로 비교적 긴 의무복무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집트가, 중남미 지역에서는 과테말라와 베네수엘라가 각각 30개월로 이 지역에서 가장 긴 의무복무기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징병제를 채택한 60여 개 국가 중 한국은 세계 6~7위의 긴 복무기간을 설정한 국가이다.

〈표 2〉 징병제 국가의 의무복무기간

지역	국가	의무복무기간	지역	국가	의무복무기간	
서 구	그 리 스	18~21개월	아 시 아	한 국	26~30개월	
	노 르 웨 이	12개월		북 한	5~10년	
	덴 마 크	4~12개월		중 국	24개월	
	독 일	9개월		대 만	22개월	
	몰 도 바	18개월		베 트 남	24~36개월	
	스 웨 덴	7~15개월		싱 가 폴	24~30개월	
	스 페 인	9개월		인도네시아	24개월	
	키프로스	26개월		태 국	24개월	
	터 키	18개월		레 바논	12개월	
	포르투갈	4~12개월	리 비 아	12~24개월		
	핀 란 드	6~12개월	모리타니아	24개월		
	동 구	그 루 지 아	18개월	중 동/ 북아프리카	모 로 코	18개월
		라 투 비 아	12개월		알 제 리	18개월
		러 시 아	18~24개월		요 르 단	24개월
루 마 니 아		12개월	이 란		21개월	
리투아니아		12개월	이 스 라 엘		21(여)/36(남)	
마케도니아		9개월	이 집 트		18~36개월	
벨로루시		18개월	과 테 말 라		30개월	
불가리아		9개월	멕 시 코		12개월	
슬로바키아		9개월	베네스엘라		30개월	
슬로베니아		7개월	볼 리 비 아	12개월		
아르메니아		24개월	중 남 미	브 라 질	12개월	
에스토니아		8~11개월		에쿠아토르	12개월	
유고슬라비아		12~15개월		엘살바도르	12개월	
체 코		12개월		칠 레	12~22개월	
크로아티아		6개월		콜 롬 비 아	12~18개월	
폴 란 드		12개월		쿠 바	24개월	
헝 가 리		9개월		파 라 과 이	12~24개월	
				페 루	24개월	

자료 : IISS(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01, 2002.

### Ⅲ.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운용실태와 국민인식

우리나라의 현행 병역제도는 헌법 제39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거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과 병역법 제3조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군인력 구조를 보면 각군 인력에 대한 장교·부사관과 사병의 비율이 육군은 18.2 : 81.8, 해군은 42.2 : 57.8, 공군은 44.3 : 55.7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육군이 해·공군에 비해 사병중심의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고, 현역사병의 수요를 나타내는 우리

〈표 3〉 현역복무·대체복무 소요인원(2001년 말 기준)

구 분		충원대상	인 원	복무기간	연간배정(명)
현역복무	육 군	현 역	456,368	26개월	210,631
	해 군	현 역	38,482	28개월	16,492
	공 군	현 역	34,258	30개월	13,703
					소계 : 240,826
기타현역복무	경 찰 지 원	현 역	24,961	28개월	10,697
	교 도 대 원	현 역	1,861	28개월	797
	장 교 후 보 생	현 역			4,000
					소계 : 15,494
대체복무	공익근무요원	보 충 역	60,589	28개월	25,966
	산업기능요원	현 역	44,869	36개월	14,956
		보 충 역	24,330	28개월	10,427
	전문연구요원	현역/보충역	13,941	5년	2,788
	특별보충역	현역/보충역	1,780	3년	593
				소계 : 54,730	
<b>총계 : 310,730</b>					

주 : 1) 현역복무인구는 부사관후보생을 포함한 수치이며, 연간소요인원은 복무기간을 고려한 수치임.

2) 2001년 말 기준의 정원에 비해 실제운영병력은 543,105명으로 정원보다 13,997명을 과다운영하고 있음.

3) 특별보충역이란 공중보건의, 징병전담의사, 의료검사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을 의미함.

자료 : 병무청, 『병무연보』(I), 2002.

나라의 연간징집소요인력을 보면, 2001년 말 현재 정원인력규모는 529,108명으로 육군이 456,368명, 해군이 38,482명, 공군이 34,258명이다.<sup>10)</sup>

따라서 각 군별 복무기간(육군: 26개월, 해군: 28개월, 공군: 30개월)의 고려 하에 현행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연간소요인력은 240,826명이다. 이러한 현역복무자 이외에도 경찰 지원, 교도대원, 장교후보생의 연간소요인력은 15,494명이며, 기타복무형태인 대체복무(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특별보충역)로 징집되는 인력이 5만 4천 명 정도로 육·해·공군과 경찰지원·교도대원 및 대체복무인원을 모두 고려할 시 현행복무 체도를 유지하기 위한 연간징집소요인력은 310,730명으로 집계된다.

한편, 상술한 연간징집소요인력과 병역자원의 공급을 나타내는 징집자원, 징병검사인력, 잉여자원을 상호 비교해 보면 국민개병주의원칙에 기초한 전면징집제의 시행여부와 병역부담의 형평성유지정도에 대한 우리의 실태를 도출할 수 있다. 실태분석에 있어 특정연령의 남성인구 중 정확히 어떤 비율의 인구가 병역의무를 집행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인구에 대한 장기적 관찰이 필수적이다. 즉, 만 18세의 남성이 징집유효기간(예를 들어 19세부터 40세 사이)에 실제로 입영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징집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들 인력의 복무유무에 대한 사후적 통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징집대상인구-징병검사인구-현역/보충역입영인구 구조를 파악하여 실제병역의무 부담자의 비율을 추정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도출하고자 한다.<sup>11)</sup>

우선 1999년과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18세(81, 83년생)의 남성인력은 각각 440,972명과 418,732명인데 실제징병검사인원은 406,440명과 398,653명으로<sup>12)</sup> 1981년

10) 실제운영병력과 정원인력규모 사이에는 각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원규모를 소요인력의 기준으로 상정하였다.

11) 세계 각국의 병역부담 형평성을 비교분석하는 지표로서 현역군인 중 징병제로 인하여 충원된 병의 비율을 나타내는 징집병비율(Conscript Ratio)과 18~22세 연령에 대한 징집병 비율을 나타내는 군연령집단 군복무율(Military Participation Ration of Military Age Cohorts)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운영되고 있는 병역제도의 형태가 복무기간과 징병제·모병제 혼합형 정도 면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공통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비교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 각국의 병역제도의 분류 및 특성에 관해서는 김병조, 「한국병역제도의 특성: 비교사회학적 분석」, 국방대학교, 『교수논총』, 24집, 2002, pp.291~312. 참조.

12) 병무청, 『병무연보』, 2000, 2001. 참조.

생의 경우에는 34,532명이 그리고 1983년생은 20,079명이 징병검사 이전에 해외유학, 행방불명, 자진 조기입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적기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셈이다. 징병검사자는 개인의 연령, 신체적 조건, 학력, 자질, 복무연차에 따라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 나뉘며, 이외에 병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면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징병검사에는 학력과 신체조건이 절대적인 선병기준으로 작용하는데 현역입영대상자의 학력수준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는 정보화된 과학전으로 군의 전투력 증강을 위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우수인력확보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고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현역병입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결과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역입영자 228,014명 가운데 대재·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72%, 고졸학력자가 28.1%로 집계되어 사병업무에 비교해 과다한 질적수준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그에 따라 1981년생은 86%에 해당하는 350,203명이, 그리고 1983년생의 경우 340,014명(85.3%)이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되었다.<sup>13)</sup>

〈표 4〉 징집대상인구 - 징병검사자 - 현역입영자 구조

출생 년도	징집대상 인구	징병검사 인구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 검사
					신체결합	신분결합		
1981	440,972	406,440 (100%)	350,203	40,996	9,083	753	910	4,495 (1.1%)
			합격 : 391,199 (96.3%)		불합격 : 10,746 (2.6%)			
1983	418,732	398,653 (100%)	340,014	41,370	8,848	864	730	6,827 (1.7%)
			합격 : 381,384 (95.7%)		불합격 : 10,442(2.6%)			

자료 : 병무청, 『병무연보』, 2000, 2001.

나머지 인원 중 보충역(전문연구요원, 전문기능요원, 공중보건의,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된 자는 각각 40,996명(1981년생)과 41,370명(1983년생)이고, 신체결합 및 신분결합 등으로 평시에는 소집되지 않으나 전시에만 근로소집되는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자, 그리

13) 세부통계에 대해서는 병무청, 『병무연보』, 2000. 참조.

고 재신체검사자는 1981년생과 1983년생 징병검사인구의 3.7%와 4.3%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만 18세의 남성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1981년생과 1983년생 남성의 79%와 81%만이 적기에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된 셈이다.

지금까지 개관한 병역자원의 수급실태를 종합해 보면, 81년생과 83년생의 경우 병역자원의 인력공급(현역판정자와 보충역판정자)이 40만 명에 가까운 반면에, 현행병역제도의 소요인구는 약 31만 명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국민개병주의에 기초한 완전징집제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부분징집제의 시행으로 야기되는 형평성 논란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징집대상인구의 75% 정도만이 현역 또는 보충역의 형태로 병역의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징집대상인구 중 순수현역(육·해·공군, 경찰지원, 교도대원, 장교후보생)으로서의 복무비율은 약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형평성 논란은 인구증가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81년 이전의 출생자들에게는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병역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클 수밖에 없다 하겠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병역기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남성들이 현역복무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3.4%가 자기발전(학업, 생업)의 지장을 이유로 들었고, 그 다음으로 통제된 생활이 24.2%, 고생, 고된 훈련 16.7%, 복무기간과다 9.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설문문항 중 「통제된 생활」과 「자기발전(학업, 생업) 지장」은 복무기간의 장·단기 유무에 관련된 문항임으로 이들 사유를 복무기간과다로 인한 병역기피사유에 포함하면 응답자의 약 80%가 복무기간과다로 인해 병

〈표 5〉 현역복무를 기피하는 이유

구 분	응답자 수	백분율(%)
고생, 고된 훈련	194	16.7
통제된 생활	281	24.2
복무기간 과다	108	9.3
자기발전(학업, 생업) 지장	504	43.4
사고발생 위험	43	3.7
기 타	32	2.8
계	1,162	100

자료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법국민안보의식조사』, 2001.

역을 기피하고 있어 병역기간의 조정은 절실하다 하겠다.<sup>14)</sup>

특히 현역복무자와 대체복무자·병역면제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병역부담의 형평성 문제<sup>15)</sup>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군복무를 담당하는 현역병(전·의경, 경비교도원 포함)과 특례보충역(연구요원, 기능요원, 공중보건의), 소집면제자들 사이에는 경제활동에 대한 기회비용의 정도가 다르고 군복무를 담당하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sup>16)</sup>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의 중단으로 인한

- 
- 14) 복무기간 조정과 더불어 복무여건의 개선 또한 복무기피 완화에 일조할 것이다. 한편, 급여개선을 통해 현역복무기피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급여개선의 정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취업인구의 급여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이는 곧 모병제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이 임금을 군의 불변소요인구에 모두 적용할 경우 국방비소요는 급등할 수밖에 없어 그 실현 가능성이 적다 하겠다. 군복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자세는 군복무가 국가에 현물세(natural tax)를 납부하는 국가봉사역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15) 군역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군역형평조세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 제도는 스위스에서 집행하고 있는 제도로 군역을 담당하는 자와 군역 면제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군역을 담당하지 않는 모든 남성이 경제활동의 일정기간 동안 실질소득의 일정비율을 조세로써 납부하는 제도이다. 물론 새로운 과세제도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겠으나 과세행정비용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는 미지수이고, 이 제도의 목적이 국가재정수입을 확대하는 데에 있지 않고 군역의 형평성을 기하는 것에 있으므로 과세행정비용의 추가발생에 기초한 반박은 그 설득력이 미약하다는 논리이다. 군역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무작위차출(draft lottery) 방법을 들 수 있겠다. 이는 병역대상자 중 군수요에 상응하는 일부인력을 무작위로 차출(draft)하는 방법인데 군역이라는 사회적 부담을 사회전역에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독일과 미국 등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무작위 차출전에 모든 인력이 동등하게 취급되고 차출될 가능성과 면제가능성이 대상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비롯된 제도이지만 군역의 형평성은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차출되지 않은 인력이 소득에 기초한 군역형평조세를 납세할 경우에만 유지될 수 있다고 하겠다. 병역부담의 형평성 유지방안에 대한 논의는 Neubauer, G., "Wehrgerechtigkeit als Teilproblem einer Gerechten Steuerpolitik," Finanzarchiv, No.42, 1984 ; Fienberg, Stephen E., "Randomization and Social Affairs: The 1970 Draft Lottery," Science, Vol.171, 1971 ; 이상목, 「징병제와 모병제: 경제적 관점에서의 비교분석」, 『국방연구』, 제43권 제2호, 2000. 참조.
- 16) 군복무인력 각 개인이 지급하는 현물세(natural tax)를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하여 남성의 학력별·연령계층별·근속년수별 급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징집사병인력(교도대원, 경찰지원인력 제외)의 기회비용을 도출할 수 있다. 즉, 현역사병복무인력의 연령계층을 20-24세로 상정하고, 우리나라 현역사병의 수와 학력별(고졸, 대제, 대졸) 연간급여(월급여와 연간특별급여)를 고려하여 현역복무자들의 연간현물세와 전체복무기간의 현물세를 도출할 수 있다. 징병제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이상목, 「병역제도의 운용실태와 사회적 비용: 쟁점과 개선방안」, 『국방연구』 제45권 2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참조.

비용과 군복무후 입대전에 취득한 기술의 부분적 진부화로 추가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교육과 결혼 시기, 직장선택 등에 대한 불안전성, 또한 군복무전 취업면접에서 군복무 면제자 또는 이수자와의 경쟁에서 직업활동의 불연속에 기인한 고용회피현상 등이다.<sup>17)</sup>

한편, 현행 병역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는 국민개병제 하에서 군의 병력수급상 발생하는 잉여병역자원을 해소하고,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병역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병역의무자에게 국가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문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예산확보가 곤란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sup>18)</sup>과 국제협력,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해 인적자원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현역복무 이외의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필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근본적으로 군소요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 규모의 방만함과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sup>19)</sup>

17) 그 이외에도 군복무면제자는 군복무자들이 창출하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effect)의 혜택을 받지만 이 혜택에 대한 내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8) 이 제도는 오래전 독일과 프랑스에서 경찰임무, 후진국의 기술지원, 평화봉사단, 시민안전단, 산림감시, 장애자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우리나라에는 1969년 2월 22일 최초로 현역복무의 대체복무로 방위소집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973년 3월 3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되면서 특례보충역이 생겨났다. 여기에는 한국과학기술원생과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 등이 대체복무대상이 되었다. 이후 잉여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체복무제도는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 중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방위소집제도 폐지에 따른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해 신설 당시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목적에 띄는 기관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보충역자원의 적체가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및 활용처의 미개발 등으로 보충역자원의 잉여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기반시설에 관련된 공익성격의 기관, 공공재를 생산하는 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로 남게 되었다.

19) 병역형평을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현역복무자와 기타 특례보충역(연구요원, 기능요원, 공중보건의)으로 근무하는 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보수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현역복무자는 군복무라는 현물세를 지급하고 낮은 보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규제된 병영생활을 하는 반면에, 특례보충역으로 근무하는 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더불어 높은 보수를 받는다. 따라서 이들 특례보충역으로 근무하는 자의 보수를 병역형평 차원에서 현역복무자들의 복지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주장은 군역 복무자와 면제자 사이의 형평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권희면·정주성·이원배(1993) 참조.

한국병역정책연구소가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인식과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축소·폐지 등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1,000명(병무청 직원 300명, 징병검사대상자 500명, 민원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축소우선순위 면에서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 전문연구요원, 전투경찰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각종 대체복무제도의 축소 우선순위

역종	공익성	인력 관리 용이성	전문 분야 활용성	예산 절약성	타인력 대체 가능성	현역 자원 점유성	종합의견	
							누계	축소 순위
전투경찰대원	4	4	1	4	2	1	16	4
교정시설대원	4	4	1	4	2	2	17	5
공익(행정관서)	3	3	1	3	1	1	12	2
공익(국제협력)	3	2	3	2	3	4	17	5
공익(예·체능)	2	2	4	1	4	4	17	5
공중보건 의사	4	2	4	3	4	2	19	6
공익법무관	3	3	4	3	4	4	21	7
전문연구요원	1	1	4	1	4	2	13	3
산업기능요원	1	1	2	1	2	1	8	1
징병전담의사	4	4	4	2	4	4	22	8

자료 : 한국병역정책연구소, 『병역자원부족과 21세기 병역정책방향』, 2002, p.64.

#### IV. 국민개병주의와 전면징집제의 향후 시행가능성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의 출생인구 및 징집대상남성인구 추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병력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과 동시에 향후에는 국민개병주의에 기초한 전면징집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그에 대한 평가를 구체화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출생인구와 징집대상인구 추이, 그리고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연간징집소요인력의 구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7〉에서는 남성출생인구와 가용인력 및 소요인력을 고려하여 잉여인력을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각 연도별 출생인구에 성별출생비를 고려하여 남성인구를 산정한 후 출생 후부터 징집대상연령이 되는 만 19세까지의 평균사망률(0.6%)<sup>20)</sup>을 참조하여 징집대상인구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불용자원,<sup>21)</sup> 즉 신분결함과 신체결함으로 인해 평시에는 소집되지 않으나 전시에는 소집되는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자의 규모가 과거 경험에 의하면 평균 징집대상인구의 약 2.5%에 해당됨으로(〈표 4〉 참조) 가용인력은 징집대상인구보다 적다. 따라서 이 징집대상인구에 불용자원을 제외한 가용인력을 산출하고 대체복무인력을 포함한 연간복무소요인력을 차감하여 잉여인력을 도출하였다.

도출결과를 보면, 1981년과 1982년에는 연간소요인력에 비해 출생인구의 과잉으로 잉여인력이 각각 13만 명과 12만 명에 달하지만 남성인구는 1983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1988년에는 출생인구가 80년대 출생인구 중 가장 낮은 338,605명을 기록하고 있고 1998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중반 가족계획사업의 강력한 추진에 따른 영향으로 출산율 및 출생아 수가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초혼연령 상승 및 20대의 미혼율 상승에 따른 출생아 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sup>22)</sup> 즉, 이는 합계출산율<sup>23)</sup>이 1981년 2.66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1990년 1.6명으로 나타났으며 1991-1995년에는 1.7명 수준을 보이다가 1996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0년 현재 1.5명 수준을 보이는 데에 기인한다. 출생성비<sup>24)</sup>는 합계출산율이 크게 줄어든 1980년대 중반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94년 이후 점차 완화되어 최근 110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병력규모와 현행 복무기간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연간 31만 명이 현역복무(부사관후보생을 포함한 병과 장교후보생, 경찰지원, 교도대원)

20)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02 참조.

21) 불용자원이란 징병검사에서 5급(신분결함과 신체결함의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자와 생계곤란으로 면제를 받은자, 또 징병검사이후 질병으로 병역처분 변경원을 내어 면제를 받은자, 그리고 군에 입영하여 입영 전 신검에서 면제를 받은자 등이며 기타 저학력, 수형, 교아 등으로 면제 받은자도 포함된다.

2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참조.

23)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출산할 평균 자녀수

24) 여성아이 100명당 남성아이 수

와 대체복무(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특별보충역)의 형태로 병역의무를 수행한다면 잉여인력은 각 연도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

〈표 7〉 출생인구 및 징집대상남성인구 추이

출생 연도	출생 인구	성별 구성비 (여자=100)	남성 인구	남성 사망률 (%) <sup>1)</sup>	징집 대상 인구	가용 인력 <sup>2)</sup>	연간소요인력			잉여 인력
							현역 <sup>3)</sup>	대체 복무 <sup>4)</sup>	계	
1981	880,310	107.2	455,450	0.6	452,717	441,399	256,000	54,730	310,730	130,669
1982	858,832	106.8	443,536	0.6	440,874	429,852	256,000	54,730	310,730	119,122
1983	778,362	107.3	402,886	0.6	400,468	390,457	256,000	54,730	310,730	79,726
1984	682,217	108.3	354,700	0.6	352,571	343,757	256,000	54,730	310,730	33,027
1985	662,510	109.4	346,125	0.6	344,048	335,447	256,000	54,730	310,730	24,717
1986	641,644	111.7	338,553	0.6	336,521	328,108	256,000	54,730	310,730	17,378
1987	629,432	108.8	327,980	0.6	326,012	317,861	256,000	54,730	310,730	7,131
1988	637,462	113.3	338,605	0.6	336,573	328,159	256,000	54,730	310,730	17,429
1989	646,197	111.7	340,955	0.6	338,909	330,436	256,000	54,730	310,730	19,706
1990	658,552	116.5	354,371	0.6	352,244	343,438	256,000	54,730	310,730	32,708
1991	718,279	112.4	380,106	0.6	377,825	368,379	256,000	54,730	310,730	57,649
1992	739,291	113.6	393,181	0.6	390,821	381,051	256,000	54,730	310,730	70,321
1993	723,934	115.3	387,690	0.6	385,363	375,729	256,000	54,730	310,730	64,999
1994	728,515	115.2	389,986	0.6	387,646	377,954	256,000	54,730	310,730	67,224
1995	721,074	113.2	382,859	0.6	380,561	371,047	256,000	54,730	310,730	60,317
1996	695,825	111.6	366,985	0.6	364,783	355,663	256,000	54,730	310,730	44,933
1997	678,402	108.2	352,561	0.6	350,445	341,684	256,000	54,730	310,730	30,954
1998	642,972	110.1	336,941	0.6	334,919	326,546	256,000	54,730	310,730	15,816
1999	616,322	109.6	322,275	0.6	320,341	312,332	256,000	54,730	310,730	1,602
2000	636,780	110.2	333,840	0.6	331,836	323,541	256,000	54,730	310,730	12,811

주 : 1) 연령별 남자사망률은 0.6%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2001년 말 기준으로 0~19세의 평균사망률 (0~9세 : 0.8%, 10~19세 : 0.4%)의 평균치를 적용하였음.

2) 징집대상인구의 약 2.5%에 해당되는 가용인력 대비 불용자원(신분결함과 신체결함의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 비율을 일괄 적용하였음.

3) 병(부사관후보생 포함), 장교후보생, 경찰지원, 교도대원

4)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특별보충역

자료 : 인구통계연보 ; 자체계산.

## V. 복무기간 조정의 가능성과 한계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에서 육군은 2년, 해·공군은 2년 6개월(다만 해병은 2년)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현역복무기간의 조정)에서는 현역복무기간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와 군내부의 증편, 창설 등 국방상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년 이내에서 연장토록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건군 이래로 사병들의 복무기간을 단축조정해 왔는데 그 변천내역을 보면 1955년 이후로 8차례에 걸쳐 복무기간을 조정하였다.

〈표 8〉 복무기간의 변천 현황

연도	복무기간(월)			변천내용
	육군	해군	공군	
1955	36	36	36	6·25 이후 3년이상 복무자 전역조치
1959	33	36	36	징집병 부담완화
1962	30	36	36	"
1968	36	39	39	1·21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1977	33	36	36	잉여자원해소
1980	30	35	35	징집병부담 완화
1990	30	32	35	해군병 획득난 해소
1993	26	30	30	방위병제도 폐지
1994	26	28	30	해군병 획득난 해소

자료 : 병무청, 『병무행정사』(상, 하), 1995.

본 장에서는 연도별 가용인력·소요인력·잉여인력 구조에 기초한 복무기간 조정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첫째, 2개월 간격의 현행 군별 복무기간(육군: 26개월, 해군: 28개월, 공군: 30개월)의 차이를 유지하고, 둘째 현역소요인구(부사관 후보생을 포함한 병소요인력과 장교후보생, 경찰지원, 교도대원)를 불변으로 상정하였다.

그에 따라 <1안>은 현역소요인구와 대체복무인구를 현행으로 유지하면서 가용인력의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한지를 도출해 본다.

〈2안〉은 현역소요인구는 불변으로 두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기초로 공익근무요원을 50% 감축할 경우 복무기간 조정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3안〉은 불변현역소요인구에서 공익근무요원뿐만 아니라 산업기능 요원을 각각 50% 감소할 경우의 복무기간 조정가능성을 검토해 본다. 이러한 가정의 상정에는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에서 우수자원의 선병을 위해 학력을 우선시하여 보충역 판정자 중 상당수가 경제적 사정으로 현역입영을 희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충역의 현역 입영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이며, 사병의 경우 모든 특기가 고학력을 요구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고학력 추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는 학력중시 선병은 무의미하다는 데에 기인한다.<sup>25)</sup>

마지막 〈4안〉은 현역소요인구는 불변으로 두되 공익근무 및 산업기능 요원제도를 완전 폐지할 경우의 단축가능한 복무기간을 산출하였다.

## 1. 불변 현역소요인구와 대체복무인구 하의 조정가능성

출생인구와 남녀성별, 0-19세의 평균남성사망률(0.6%) 및 불용자원(신분결함과 신체결함의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비율(2.5%)을 고려한 가용인력은 1981년 이후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2개월 간격의 현행 군별 복무기간(육군: 26개월, 해군: 28개월, 공군: 30개월)을 각각 1개월 씩 줄일 경우 연간 소요인력규모(부사관 후보생을 포함한 병 소요인력과 장교후보생, 경찰지원, 교도대원)는 증가세를 보인다. 단지, 소요인력 산출시, 경찰지원과 교도대원의 복무기간이 해군복무기간과 같은 28개월이므로 이들의 복무기간은 1개월씩 단축하는 것을 전제하였으나, 공익근무요원(28개월)과 산업기능요원(현역판정자: 36개월, 보충역판정자: 28개월), 전문연구요원(5년), 특별보충역(3년)의 복무기간은 현행복무기간을 준수하는 것을 기초로 소요인력을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복무기간을 각 군별로 1개월씩 단축할 경우, 1987년생이 입대하는 2006년과 1999년생이 입대하는 2018년에 다소 인력과부족현상이 나타나지만 그 두 해의 전후년도

25) 정주성 외, 『21세기 병무행정 비전 및 정책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00, p.134.

에 수십만 규모의 누적잉여인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단축의 병역기간 조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개월 단축 또한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개월 단축의 경우, 1985~1989년 출생자(2004~2008년 입대) 사이에 약 7만 7천 명 정도의 인력과부족 현상이 발생하는데 1981~1984년 출생자 사이에 누적잉여인력이 약 23만 명이 존재하므로 병무행정 측면에서 입대년도를 조정하는 것에는 애로가 있겠으나 전체수급에는 문제가 없고, 또한, 1997~2000년 출생자(2015~2018년 입대) 사이에도 인력과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1990~1996년 출생자에 의한 누적잉여인력이 충분하므로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지 4~6개월의 단축은 단축기간이 클수록 인력과부족 현상이 심화되므로 4개월 이상의 단축은 기술집약형 군구조개편에 의한 현역소요인력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불변 현역소요인구와 대체복무인구 하의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1만)

출생연도	구분 가용인력	1개월단축		2개월단축		3개월단축		4개월단축		5개월단축		6개월단축	
		소요인력	잉여인력	소요인력	잉여인력	소요인력	잉여인력	소요인력	잉여인력	소요인력	잉여인력	소요인력	잉여인력
1981	441,399	320,986	120,413	331,736	109,663	343,407	97,992	356,121	85,278	370,027	71,372	385,300	56,099
1982	429,852	"	108,867	"	98,117	"	86,446	"	73,732	"	59,826	"	44,553
1983	390,457	"	69,471	"	58,721	"	47,050	"	34,336	"	20,430	"	5,157
1984	343,757	"	22,772	"	12,022	"	351	"	-12,363	"	-26,269	"	-41,542
1985	335,447	"	14,461	"	3,711	"	-7,960	"	-20,674	"	-34,580	"	-49,853
1986	328,108	"	7,123	"	-3,627	"	-15,298	"	-28,012	"	-41,918	"	-57,191
1987	317,861	"	-3,124	"	-13,874	"	-25,545	"	-38,259	"	-52,165	"	-67,438
1988	328,159	"	7,173	"	-3,577	"	-15,248	"	-27,962	"	-41,868	"	-57,141
1989	330,436	"	9,451	"	-1,299	"	-12,970	"	-25,684	"	-39,590	"	-54,863
1990	343,438	"	22,453	"	11,703	"	32	"	-12,682	"	-26,588	"	-41,861
1991	368,379	"	47,394	"	36,644	"	24,973	"	12,259	"	-1,647	"	-16,920
1992	381,051	"	60,065	"	49,315	"	37,644	"	24,930	"	11,024	"	-4,249
1993	375,729	"	54,744	"	43,994	"	32,323	"	19,609	"	5,703	"	-9,570
1994	377,954	"	56,969	"	46,219	"	34,548	"	21,834	"	7,928	"	-7,345
1995	371,047	"	50,062	"	39,312	"	27,641	"	14,927	"	1,021	"	-14,252
1996	355,663	"	34,678	"	23,928	"	12,257	"	-457	"	-14,363	"	-29,636
1997	341,684	"	20,698	"	9,948	"	-1,723	"	-14,437	"	-28,343	"	-43,616
1998	326,546	"	5,560	"	-5,190	"	-16,861	"	-29,575	"	-43,481	"	-58,754
1999	312,332	"	-8,653	"	-19,403	"	-31,074	"	-43,788	"	-57,694	"	-72,967
2000	323,541	"	2,555	"	-8,195	"	-19,866	"	-32,580	"	-46,486	"	-61,759

주 : 가용인력은 출생인구와 남녀성별, 0~19세의 평균남성사망률(0.6%) 및 불용자원(신분결함과 신체결함의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비율을 고려한 수치임.

## 2. 불변현역소요인구와 공익근무요원 감소시 조정가능성

〈2안〉은 현역소요인구는 불변으로 두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을 기초로 공익근무요원을 50% 감축할 경우 복무기간 조정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검토 결과, 4개월까지 복무기간 단축이 가능한데, 이는 1985~1989년 출생자(2005~2009년 입대) 사이에 인력과부족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 규모가 1985년 이전의 누적잉여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히 적기 때문이다.

〈표 10〉 공익근무 요원 50% 감소하의 복무기간 조정가능성(2안)

출생 년도	구 분	1개월단축		2개월단축		3개월단축		4개월단축		5개월단축		6개월단축		
		가용 인력	소요 인력	소요 인력	잉여 인력	소요 인력	잉여 인력	소요 인력	잉여 인력	소요 인력	잉여 인력	소요 인력	잉여 인력	
1981		441,399	308,003	133,396	318,753	122,646	330,424	110,975	343,138	98,261	357,044	84,355	372,317	69,082
1982		429,852	"	121,850	"	111,100	"	99,429	"	86,715	"	72,809	"	57,536
1983		390,457	"	82,454	"	71,704	"	60,033	"	47,319	"	33,413	"	18,140
1984		343,757	"	35,755	"	25,005	"	13,334	"	620	"	-13,286	"	-28,559
1985		335,447	"	27,444	"	16,694	"	5,023	"	-7,691	"	-21,597	"	-36,870
1986		328,108	"	20,106	"	9,356	"	-2,315	"	-15,029	"	-28,935	"	-44,208
1987		317,861	"	9,859	"	-891	"	-12,562	"	-25,276	"	-39,182	"	-54,455
1988		328,159	"	20,156	"	9,406	"	-2,265	"	-14,979	"	-28,885	"	-44,158
1989		330,436	"	22,434	"	11,684	"	13	"	-12,701	"	-26,607	"	-41,880
1990		343,438	"	35,436	"	24,686	"	13,015	"	301	"	-13,605	"	-28,878
1991		368,379	"	60,377	"	49,627	"	37,956	"	25,242	"	11,336	"	-3,937
1992		381,051	"	73,048	"	62,298	"	50,627	"	37,913	"	24,007	"	8,734
1993		375,729	"	67,727	"	56,977	"	45,306	"	32,592	"	18,686	"	3,413
1994		377,954	"	69,952	"	59,202	"	47,531	"	34,817	"	20,911	"	5,638
1995		371,047	"	63,045	"	52,295	"	40,624	"	27,910	"	14,004	"	-1,269
1996		355,663	"	47,661	"	36,911	"	25,240	"	12,526	"	-1,380	"	-16,653
1997		341,684	"	33,681	"	22,931	"	11,260	"	-1,454	"	-15,360	"	-30,633
1998		326,546	"	18,543	"	7,793	"	-3,878	"	-16,592	"	-30,498	"	-45,771
1999		312,332	"	4,330	"	-6,420	"	-18,091	"	-30,805	"	-44,711	"	-59,984
2000		323,541	"	15,538	"	4,788	"	-6,883	"	-19,597	"	-33,503	"	-48,776

### 3. 불변현역소요인구와 공익근무·산업기능요원 감소시 조정가능성

〈3안〉은 〈2안〉과 마찬가지로 불변현역소요인구에서 공익근무요원뿐만 아니라 산업기능 요원을 각각 50% 감소할 경우의 복무기간 조정가능성을 도출하였는데, 4개월까지의 복무기간 단축이 〈2안〉에 비해 그 실현 가능성이 인력수급 측면에서 훨씬 높으나 5개월 단축을 가능하게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11〉 공익근무·산업기능 요원 각각 50% 감소하의 복무기간 조정가능성(3안)

출생 년도	구 분		1개월단축		2개월단축		3개월단축		4개월단축		5개월단축		6개월단축	
	가용 인력	소요 인력	소요 인력	잉여 인력	소요 인력	잉여 인력	소요 인력	잉여 인력	소요 인력	잉여 인력	소요 인력	잉여 인력	소요 인력	잉여 인력
1981	441,399	295,312	146,087	306,062	135,337	317,733	123,666	330,447	110,952	344,353	97,046	359,626	81,773	
1982	429,852	"	134,541	"	123,791	"	112,120	"	99,406	"	85,500	"	70,227	
1983	390,457	"	95,145	"	84,395	"	72,724	"	60,010	"	46,104	"	30,831	
1984	343,757	"	48,446	"	37,696	"	26,025	"	13,311	"	-595	"	-15,868	
1985	335,447	"	40,135	"	29,385	"	17,714	"	5,000	"	-8,906	"	-24,179	
1986	328,108	"	32,797	"	22,047	"	10,376	"	-2,338	"	-16,244	"	-31,517	
1987	317,861	"	22,550	"	11,800	"	129	"	-12,585	"	-26,491	"	-41,764	
1988	328,159	"	32,847	"	22,097	"	10,426	"	-2,288	"	-16,194	"	-31,467	
1989	330,436	"	35,125	"	24,375	"	12,704	"	-10	"	-13,916	"	-29,189	
1990	343,438	"	48,127	"	37,377	"	25,706	"	12,992	"	-914	"	-16,187	
1991	368,379	"	73,068	"	62,318	"	50,647	"	37,933	"	24,027	"	8,754	
1992	381,051	"	85,739	"	74,989	"	63,318	"	50,604	"	36,698	"	21,425	
1993	375,729	"	80,418	"	69,668	"	57,997	"	45,283	"	31,377	"	16,104	
1994	377,954	"	82,643	"	71,893	"	60,222	"	47,508	"	33,602	"	18,329	
1995	371,047	"	75,736	"	64,986	"	53,315	"	40,601	"	26,695	"	11,422	
1996	355,663	"	60,352	"	49,602	"	37,931	"	25,217	"	11,311	"	-3,962	
1997	341,684	"	46,372	"	35,622	"	23,951	"	11,237	"	-2,669	"	-17,942	
1998	326,546	"	31,234	"	20,484	"	8,813	"	-3,901	"	-17,807	"	-33,080	
1999	312,332	"	17,021	"	6,271	"	-5,400	"	-18,114	"	-32,020	"	-47,293	
2000	323,541	"	28,229	"	17,479	"	5,808	"	-6,906	"	-20,812	"	-36,085	

#### 4. 불변현역소요인구와 공익근무·산업기능요원 제도 폐지시 조정가능성

마지막 <4안>은 현역소요인구는 불변으로 두되 공익근무 및 산업기능 요원제도를 완전 폐지할 경우의 단축가능한 복무기간을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현행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모두가 현역입영대상자로 전환됨으로 가용인력의 수급측면에서 최소 6개월 까지의 병역기간단축이 가능할 수 있다. 단지, 이러한 현행제도의 급격한 폐지는 병역의 무완수의 다양성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그 반발이 적지 않을 것임으로 4안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12> 공익근무·산업기능 요원 제도 폐지시의 조정가능성(4안)

구 분	1개월단축		2개월단축		3개월단축		4개월단축		5개월단축		6개월단축		
출생 년도	가용 인력	소요 인력	잉여 인력	소요 인력	잉여 인력	소요 인력	잉여 인력	소요 인력	잉여 인력	소요 인력	잉여 인력	소요 인력	잉여 인력
1981	441,399	269,637	171,762	280,387	161,012	292,058	149,341	304,772	136,627	318,678	122,721	333,951	107,448
1982	429,852	"	160,216	"	149,466	"	137,795	"	125,081	"	111,175	"	95,902
1983	390,457	"	120,820	"	110,070	"	98,399	"	85,685	"	71,779	"	56,506
1984	343,757	"	74,121	"	63,371	"	51,700	"	38,986	"	25,080	"	9,807
1985	335,447	"	65,810	"	55,060	"	43,389	"	30,675	"	16,769	"	1,496
1986	328,108	"	58,472	"	47,722	"	36,051	"	23,337	"	9,431	"	-5,842
1987	317,861	"	48,225	"	37,475	"	25,804	"	13,090	"	-816	"	-16,089
1988	328,159	"	58,522	"	47,772	"	36,101	"	23,387	"	9,481	"	-5,792
1989	330,436	"	60,800	"	50,050	"	38,379	"	25,665	"	11,759	"	-3,514
1990	343,438	"	73,802	"	63,052	"	51,381	"	38,667	"	24,761	"	9,488
1991	368,379	"	98,743	"	87,993	"	76,322	"	63,608	"	49,702	"	34,429
1992	381,051	"	111,414	"	100,664	"	88,993	"	76,279	"	62,373	"	47,100
1993	375,729	"	106,093	"	95,343	"	83,672	"	70,958	"	57,052	"	41,779
1994	377,954	"	108,318	"	97,568	"	85,897	"	73,183	"	59,277	"	44,004
1995	371,047	"	101,411	"	90,661	"	78,990	"	66,276	"	52,370	"	37,097
1996	355,663	"	86,027	"	75,277	"	63,606	"	50,892	"	36,986	"	21,713
1997	341,684	"	72,047	"	61,297	"	49,626	"	36,912	"	23,006	"	7,733
1998	326,546	"	56,909	"	46,159	"	34,488	"	21,774	"	7,868	"	-7,405
1999	312,332	"	42,696	"	31,946	"	20,275	"	7,561	"	-6,345	"	-21,618
2000	323,541	"	53,904	"	43,154	"	31,483	"	18,769	"	4,863	"	-10,410

## V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분포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병역제도(전면징집제)의 운용실태와 병역부담회피사유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개관하였으며, 우리나라 병역자원의 수급전망을 기초로 복무기간 조정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전면징집제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은 병역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병무행정의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1,158명)의 57.6%가 병무행정의 개선 사항 중 징집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남성의 관심은 한층 높은 65.4%로 조사되고 있으며,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징집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지난 1999년 12월 23일의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과 거듭되는 대선 및 총선 후보의 병역의무이행 및 복무기간 조정에 관한 논쟁 등은 우리사회에 병역제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의무복무기간을 보면 각 나라마다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서구와 동구지역 국가들의 의무복무기간이 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의무복무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짧으며, 서구지역국가 중 키프로스가 26개월로 가장 길고, 동구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아르메니아가 18~24개월로 가장 길다. 또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집트가, 중남미 지역에서는 과테말라와 베네수엘라가 각각 30개월로 이 지역에서 가장 긴 의무복무기간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북한이 5~10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길고, 한국이 26~30개월, 베트남, 싱가포르가 24~30개월로 비교적 긴 의무복무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징병제를 채택한 60여 개 국가 중 한국은 세계 6~7위의 긴 복무기간을 설정한 국가이다.

타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은 우리나라 남성들이 현역복무를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병역기피사유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43.4%가 자기발전(학업, 생업)의 지장을 이유로 들었고, 그 다음으로 통제된 생활이 24.2%, 고생, 고된 훈련은 16.7%, 복무기간과다가 9.3%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설문문항 중 「통제된 생활」과 「자기발전(학업, 생업) 지장」은 복무기간의 장단기 유무에 관련된

문항이므로 이들 사유를 복무기간과다로 인한 병역기피사유로 보면 응답자의 약 80%가 복무기간과다로 인해 병역을 기피하고 있어 병역기간의 조정은 절실하고, 특히 현역복무자, 대체복무자, 병역면제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병역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무기간 조정가능성에 대한 분석의 틀로써 2개월 간격의 현행 군별 복무기간(육군: 26개월, 해군: 28개월, 공군: 30개월)의 차이를 유지하고, 둘째 현역소요인구(부사관 후보생을 포함한 병소요인력과 장교후보생, 경찰지원, 교도대원)를 불변으로 둔다는 것을 전제로 불용자원(0~19세의 평균남성사망률 및 신분결함과 신체결함의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자)을 제외한 연도별 가용인력·소요인력·잉여인력 구조에 기초해 복무기간 조정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현역소요인구와 대체복무인구를 현행으로 유지하면서 가용인력의 변화에 의존할 경우(1안), 2개월 단축의 병역기간 조정은 무리없이 시행될 수 있겠고 3개월 단축은 가용인력 과잉공급년도의 누적잉여인력을 인력과부족년도에 적절히 분산하는 병무행정 측면에서 다소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4개월 이상의 단축은 기술집약형 군구조개편에 의한 현역소요인력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현역소요인구는 불변으로 두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을 기초로 공익근무요원을 50% 감축하거나(2안) 또는 공익근무 및 산업기능 요원을 공히 50% 감소할 경우(3안), 4개월까지의 복무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단지 (2안)에 비해 (3안) 실현 가능성이 인력수급 측면에서 훨씬 높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현역소요인구는 불변으로 두되 공익근무 및 산업기능 요원제도를 완전 폐지할 경우(4안), 현행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모두가 현역입영대상자로 전환되므로 가용인력의 수급측면에서 6개월까지도 병역기간단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제도의 급격한 폐지는 병역의무원수의 다양성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그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4안)의 실현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병역제도 및 병무행정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3개월 단축 가능성을 보인 (2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대체복무제도의 확대로 인한 병역부담자 사이의 형평성 논란과 병역기간과다로 인한 병역기피현상을 고려할 때 공익근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감축하고 현역복무자의 복무기간을 4개월까지 단축하

는 것(3안)이 보다 더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징병제도라는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현행 군구조에 소요되는 병력 수를 불변으로 간주하고 단지 병역자원 수급전망에 따른 복무기간의 조정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향후의 국방정책이 어떠한 속도와 강도로 미래 지향적 첨단기술군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소요인력은 가변적일 수 있으며 복무기간 또한 재조정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행제도 하에서는 군복무인력이 국가의 강권력에 의해 소집되고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된 보수를 받는 반면에 군사적 자본재는 시장가격에 의해 조달됨에 따라 투입요소의 상대가격에 대한 왜곡현상이 불가피하고 그 결과 노동집약적 군구조와 군인력의 과잉현상(military overmanning)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군인력의 과잉현상은 방산기술의 발전과 현대화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체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서 최신무기의 각축전인 현대전에서는 국가안보목표의 달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투입요소에 대한 상대가격의 왜곡은 그 이외에도 군내부에서의 인력투입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가격메커니즘에 의해 채용된 인력을 각 개인의 능력(생산성)에 기초해 적소에 투입하는 반면에 군당국의 입장에서는 징집인력을 각 개인의 역량과 생산성에 기초해 투입·배치해야 할 동기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동기결여는 군당국에서뿐만 아니라 군복무를 담당하는 당사자들에게도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다.

결국, 첨단기술군이라는 작지만 강한 군대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병역부담자들 사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론과 각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병역제도개선의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경엽·이건재·정종식, 「병역제도 선택에 관한 이론연구」, 신정현 편, 『선진국방의 비전과 과제』, 나남, 1996.
- 김병조, 「한국병역제도의 특성: 비교사회학적 분석」, 『교수논총』, 제24집, 국방대학교, 2002.
- 병무청, 『병무연보』, 2002.
- 안용식 외, 「'98 범국민안보의식조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 이상목, 「징병제와 모병제: 경제적 관점에서의 비교분석」, 『국방연구』, 제43권 제2호, 2000.
- 이상목, 「병역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소고: 비교분석과 정책대안」, 『제도연구』, 제4집, 한국경제연구원, 2002.
- 이상목, 「병역제도의 운용실태와 사회적 비용: 쟁점과 개선방안」, 『국방연구』, 제45권 2호, 2002.
- 정주성 외, 『21세기 병무행정 비전 및 정책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00.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02.
- 한국병역정책연구소, 『병역자원부족과 21세기 병역정책방향』, 2002.
- 홍두승, 『21세기의 군과 시민사회(하)』, 2000, 6 (통권 제16호), [www.mnd.go.kr/mnd-news/sosik/2000/06/2.htm](http://www.mnd.go.kr/mnd-news/sosik/2000/06/2.htm)
- Beck, A., Prinz, A., “Wehrpflicht-ökonomisch betrachtet,” *Wirtschaftsdienst* 1994/IX, pp.449-456.
- Ehlert, W., “Zur Diskussion Wehrpflicht-Freiwilligenstreitkräfte,” Eine Zusammenstellung der gängigen Argumente, *Studie des Zentrums Innere Führung*, Bereich 5, 1992.
- Friedman, M., “Why not a Volunteer Army?,” in: S. Tax(edit.) *The Draft*, Chicago, 1966.
- IISS(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01,

2002.

Koellner, L., "Wehrpflichtarmee-Berufsarmee-Finanzwissenschaftliche und wirtschaftliche Überlegungen: Bemerkungen zur Problematik einer Berufsarmee," *Heere International*, Bd. 1, Herford und Bonn, 1981.

Oi, W., "The Economic Cost of the Draft," *American Economic Review*, 57, 1967.

ONeal, John O, "Bugetary Savings from Conscription and Burden Sharing in NATO," *Defense Economics*, Vol.2, 1992.

Schäfer, W., Schleicher, M., "Zur Frage der Volkswirtschaftlichen Opportunitätskosten einer Allgemeinen Dienstpflicht," Hamburg, 1996.

Schütte, C., "Ökonomische Aspekte der Wehrpflicht", *Wirtschaftsdienst*, 1991/II.

Sjaastad, L. ; Hansen, R. W., "The Distributive Effect of Conscription: Implicit Taxes and Transfer under the Draft System," in: Kenneth E. Boulding, Martin Pfaff(Edit.), *Redistribution to the Rich and to the Poor*, 1972.

Tax, S., "The Draft", *A Handbook of Facts and Alternatives*, The University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1967.

## The Perspects of Supply and Demand for Military Manpower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Reduction of a Term of Military Service

Sang-Mok Lee

There have been significant variations in the demographic compositions and experience distribution of the armed forces. In light of social costs and burden distribution etc., the question about reasonable conscripted term of military service in the draft has been a serious issue and been furiously debated.

This survey is an empirical study of the supply and demand for military manpower in the future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reasonable conscripted term. But, this survey does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military downsizing now underway and elsewhere. It is too early to tell what effects they will have on various measures of the effectiveness and how changed military organizational structures associated with future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strategies might be modified to minimize their impact.

key word : draft, conscripted term, manpower